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서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4. 1. .
발 의 자 : 서종수·박영길·한일용
마동환·유동균·김수진
조남진의원(7명)

1. 개정이유

의장·부의장 선거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“**표**”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「공직선거법」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(안 제6조제5항).
- 나. 의장·부의장 후보자 등록 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6조의2제1항)
- 현 행 : 선거일 10일 전부터
 - 개정안 :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법』 제48조, 제7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
(1) 개정규칙안 : 별첨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“”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「공직선거법」 제179조를 준용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“(후보자등록)”을 “(후보자 등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10일 전부터”를 “전 5일부터 2일간”으로, “별지서식”을 “별지 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아니한다.”를 “아니하며,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후보자 등록은 그 다음 날로 한다.”로 한다.

“[별지서식]”을 “[별지 서식]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의장·부의장의선거) ①~④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6조의2(후보자등록) ① 의장·부의장 후보자의 등록은 해당 선거일 <u>10일 전부터</u>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<u>별지서식</u>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<u>아니한다</u>.</p> <p>② (생략)</p> <p>[별지서식] 후보자 등록 신청서(제6조의2 제1항 관련) (생략)</p>	<p>제6조(의장·부의장의선거) 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“”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「공직선거법」 제179조를 준용한다.</u></p> <p>제6조의2(후보자 등록) ① ----- ----- ----- <u>전 5일부터 2일간</u>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서식</u>----- ----- ----- <u>아니하며,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후보자 등록은 그 다음 날로 한다.</u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지 서식] 후보자 등록 신청서(제6조의2 제1항 관련) (현행과 같음)</p>